

<‘덜 짠’, ‘덜 단’ 등>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지속 확대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25.~10.15.)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빵류**, 어육소시지, 초콜릿 등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2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 표시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

- ① **나트륨(10종)** : 빵류 중 베이글·바게트·치아바타·크로와상·식빵·모닝빵·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찌개·전골,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
- ② **당류(5종)** :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①식사 대응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②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③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④여자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자 어린이 등이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까지 포함한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 유사한 제품인 즉석조리식품(국·탕, 찌개·전골)은 현재 저감 표시 대상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기용기 (043-719-2252)
		담당자	연구관	이순규 (043-719-2262)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란 어떤 규정인가요?
-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규정과는 별도로 나트륨·당류 함량을
 - ① 시중 유통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줄인 경우
 - 또는 ②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저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임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배경은?
-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1~’25)」 목표* 달성과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함
 - * (나트륨) 1일 섭취량을 ‘25년까지 3,000mg 이하로 감소(‘23년, 3,136mg)
 - (당류) 가공식품 통한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50g)로 관리(‘23년, 7.7%)
-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량은 어느 정도인지?
-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정책 추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000mg/일)에 비해 1.6배 높고,
 - 여자 어린이·청소년 등의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1일 총 열량의 10% 미만)을 초과*
 -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비율(‘23년): 10.2%(6-11세 여자), 11.1%(12-18세 여자), 10.5%(19-29세 여자)
- 이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올해는 ①식사 대응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②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③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④여자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자 어린이 등이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으로 확대함

구분	현행	개정
적용 대상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u>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로와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u> <u>사.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찌개·전골</u> <u>아.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u>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u>카. 초콜릿</u> <u>타. 밀크초콜릿</u> <u>파. 준초콜릿</u> <u>하.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u>